

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안 년 월 일 : 2022년 12월 20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의안 번호	관련 301
----------	-----------

1. 수정이유

- 안 제5조제3항의 침수 방지시설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 시기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,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5조제3항의 “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”로 함.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의 “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<u>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</u>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의</u> <u>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풍수해”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.
2. “침수 방지시설”이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

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
3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
4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 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비용 지원)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

울특별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